

문서번호	건강정책과-2716
결재일자	2016.2.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건강도시담당	건강정책과장	보건소장	부구청장	
정순옥	박대석	정유섭	황원숙	02/29 代손정수	
협 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016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2016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시 「2016년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 추진 자치구 공모」와 관련하여, 우리구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민간단체 선정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I

개최 개요

- 일 시 : 2016. 2. 26(금) 14:00~15:40
- 장 소 : 보건소 8층 sb기획실
- 대 상 : 1개 단체(길음종합사회복지관)
- 심사위원 구성 : 7명(외부위원 4명)
- 심사원칙 및 방법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와 심사평가표에 의한 평가
 - 심사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및 위원 과반수 70점 이상 득표시 선정
- 참석위원 : 총 5명
 - 내부위원 : 황원숙 보건소장, 이응철 건강관리과장
 - 외부위원 : 유호신(고려대 간호학과 교수), 양현중(마을사회적 경제센터장), 김성남(동대문구 정신건강증진센터 팀장)

II

선정 결과

- 선정결과
 - 심사점수 : 심사위원 평균점수 83.6점 및 70점 이상 위원 5명
 - 선정기관 :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기관명	대표	주소	평균점수	70점 이상
길음종합사회복지관	장민균	성북구 삼양로8가길 32	83.6	5명

III 심사의견 요지

연번	위원명	심사의견
1	황원숙 보건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보건사업과 달리, 생태계기반조성사업은 주민이 단순한 사업대상자가 아니라 주민 스스로 건강문제를 발굴, 분석, 기획하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주민 소모임 등을 만들며, 건강네트워크 구축 등을 하는 사업임. 작년에 수행한 생명의전화복지관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단하게 되어 올해는 사업의 주체가 바뀌게 되어 신규사업으로 다시 민간위탁 공모를 하게 됨. 신청한 민간단체가 성북구 소생활권 건강생태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평가해주시기 바람.
2	유호신 고려대 간호학과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의 복지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건강 문제로 접근을 해야 함. 보건소 등에 보건사업의 지표나 건강자료는 이미 많은 자료가 있음. 의제 발굴이나 조사사업, 인건비, 건강축제 등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기 보다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 진행과 추후에 예산 보조가 없더라도 주민이 자생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추진하기 바람.
3	양현준 마을사회적 경제센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년 1차년도 사업(자원조사, 발굴 등)에 비해 올해 사업에는 더 진행되고 강화된 사업을 진행하기 바람.
4	김성남 동대문구 정신건강 증진센터 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건강의 문제는 어느 사업에나 포함하여 진행해야 할 것 같음. 건강탐사단에 대학생,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병·의원들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사업이 복지관의 직접 사업이 되어 병의원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바람.

5	이응철 성북구 건강관리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관은 인프라 구축과 경험은 많지만 사회복지사들이 복지가 아닌 건강에 대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야 할 것 같고, 특히 사회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건강 등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바람 '찾동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생태계사업도 추진하길 바람.
---	----------------------	---

◆ 심사진행 사진



심사위원회 개최



제안 설명



질의 응답

IV 향후 추진 계획

- ◆ 심사결과 통보(개별 통보) 2016. 2. 29(월)
- ◆ 민·관 협력계획서 서울시 제출 2016. 3. 7(월)

- 붙임 1. 심사의결서 1부.
2. 심사표 각 5부.
3. 선정위원회 회의록 1부. 끝.